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9. 2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9월 4일 이동주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9월 24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동주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공유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내실 있는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여야 함
(안 제6조)
- 다.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4조)
-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공자원인 사무실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공유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사업 발굴·실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으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구청장은 마포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는 공유촉진정책으로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범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심의·자문 대상 안건관련 참석불가, 위원의 해촉 사항, 회의 소집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 관리 및 다른 목적 사용금지와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과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동 제정조례안은 민간 부분의 공유문화 저변 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시민사회 · 기업 · 공공부문간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공유경제 육성 및 협력적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촉진사업에 동참하여 2014년 9월 현재 용강동 삼개나루 서로 좋은 공유센터 외 2개 사업 3,300만원의 공유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외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하여 다소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민에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은 마땅한 행정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